

[붙임1]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 계획도



신기지구 전원마을 용지분양 신청서

신청용지			비 고
소재지	택지번호	면적(m ²)	
진도군 군내면 나리			

귀 진도군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위 용지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용지분양 신청용) 1부
2.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1개월 내 발행분 1부)
3.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 유의서 열람 확인서 1부
4. 확약서
5.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
6. 입주민협의회 가입 동의서(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 제출) 1부

진도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분양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 운영기관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분양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진도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분양 대상 선정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분양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진도군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 유의서

제1조(목적) 이 분양신청 유의서는 진도군(이하 “갑”이라 한다)의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분양신청 유의서는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성용지 분양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현물열람) 용지매입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토지의 현물을 열람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방법) ① 조성용지 분양 공급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 분양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5조(분양가격의 결정) 조성용지의 분양가격은 별표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분양신청·접수) ① 조성용지 분양신청자는 분양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 신청서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분양신청일 현재 1개월이내 발행분)
4.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성용지 분양 신청 유의서 열람확인서
5. 확약서
6. 입주민협의회 가입 동의서(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 제출)
7. 위임장,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제7조(계약체결) ①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성용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군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인감도장
2. 서약서(전매를 하지 않음)
3. 위임장,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분양 계약금 및 잔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조성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등의 건설) ① 주택용지를 분양 받는자는(이하 “을”이라한다) 조성용 지 주택의 건축은 분양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의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허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착공이 불가 할 경우 “갑”의 승인 받아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 다.

② “을”은 주택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진 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 건축)와 부합되도록 한다. 단 4순위 이후 분양 자는 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서의 입면 형태에 준하여 건축하고 평형 은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할수 있다.

제10조(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신청자 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洞)에서 농 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용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

우자이면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이 가능한자에 한한다.

제11조(조성용지의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한다.

제12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갑”은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등을 분양받은 경우
 2. 분양된 조성용지를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잔금을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 납부전에 분양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1. 기타 군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을”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지연 이자) 분양계약자가 약정기일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인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진도군이 인정 하는 경우

제14조(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 ①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 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② “갑”은 제1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한다.
- ③ 제12조제1항의 분양계약의 해제사유중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분양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 거나 또는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계약해제시 1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 ⑥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시 예치이자는 “갑”에 귀속되며,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5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비용은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용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3.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

제16조(기타 유의사항) ① 조성용지를 분양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성용지의 현 물 및 본 유의서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분양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등 관련법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는 분양 받은 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는 우 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 위임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임내용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기지구 전원마을 토지분양 조성
용지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1통

2020. . .

위 임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진도군수 귀하

[별표1]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가격

분양용지(군내면나리)			분양금액			
택지 번호	면적 (㎡)	단가(원/㎡)	공급가액(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2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3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4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5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6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7	239	160,000	38,240,000	3,824,000	22,944,000	11,472,000
8	238	160,000	38,080,000	3,808,000	22,848,000	11,424,000
9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10	238	159,333	37,921,330	3,792,130	22,752,800	11,376,400
11	236	159,333	37,602,660	3,760,260	22,561,600	11,280,800
12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13	238	160,000	38,080,000	3,808,000	22,848,000	11,424,000
14	237	159,333	37,762,000	3,776,200	22,657,200	11,328,600
15	237	159,333	37,762,000	3,776,200	22,657,200	11,328,600
16	237	159,333	37,762,000	3,776,200	22,657,200	11,328,600
17	237	159,333	37,762,000	3,776,200	22,657,200	11,328,600
18	237	159,333	37,762,000	3,776,200	22,657,200	11,328,600
19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20	237	160,333	37,999,000	3,799,900	22,799,400	11,399,700
21	244	160,000	39,040,000	3,904,000	23,424,000	11,712,000
22	252	160,000	40,320,000	4,032,000	24,192,000	12,096,000
23	240	160,000	38,400,000	3,840,000	23,040,000	11,520,000
24	228	160,000	36,480,000	3,648,000	21,888,000	10,944,000
25	206	160,000	32,960,000	3,296,000	19,776,000	9,888,000
26	200	160,333	32,066,660	3,206,660	19,240,000	9,620,000
27	211	160,333	33,830,330	3,383,030	20,298,200	10,149,100
28	207	160,000	33,120,000	3,312,000	19,872,000	9,936,000
29	213	160,000	34,080,000	3,408,000	20,448,000	10,224,000
30	219	160,000	35,040,000	3,504,000	21,024,000	10,512,000
31	233	160,333	37,357,660	3,735,760	22,414,600	11,207,300
32	220	160,333	35,273,330	3,527,330	21,164,000	10,582,000
33	228	160,000	36,480,000	3,648,000	21,888,000	10,944,000
34	244	160,000	39,040,000	3,904,000	23,424,000	11,712,000
35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36	210	160,000	33,600,000	3,360,000	20,160,000	10,080,000
37	202	159,000	32,118,000	3,211,800	19,270,800	9,635,400
38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39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40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41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42	237	160,333	37,999,000	3,799,900	22,799,400	11,399,700
43	237	160,667	38,078,000	3,807,800	22,846,800	11,423,400
44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45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46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47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48	234	160,333	37,518,000	3,751,800	22,510,800	11,255,400
49	237	160,333	37,999,000	3,799,900	22,799,400	11,399,700
50	238	160,000	38,080,000	3,808,000	22,848,000	11,424,000
51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52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53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54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55	237	160,333	37,999,000	3,799,900	22,799,400	11,399,700
56	237	161,000	38,157,000	3,815,700	22,894,200	11,447,100
57	241	160,000	38,560,000	3,856,000	23,136,000	11,568,000
58	257	160,000	41,120,000	4,112,000	24,672,000	12,336,000
59	249	160,000	39,840,000	3,984,000	23,904,000	11,952,000
60	245	160,000	39,200,000	3,920,000	23,520,000	11,760,000
61	230	161,000	37,030,000	3,703,000	22,218,000	11,109,000
62	241	161,000	38,801,000	3,880,100	23,280,600	11,640,300
63	229	160,000	36,640,000	3,664,000	21,984,000	10,992,000
64	229	160,000	36,640,000	3,664,000	21,984,000	10,992,000
65	230	160,000	36,800,000	3,680,000	22,080,000	11,040,000
66	227	161,000	36,547,000	3,654,700	21,928,200	10,964,100
67	202	161,000	32,522,000	3,252,200	19,513,200	9,756,600
68	195	160,000	31,200,000	3,120,000	18,720,000	9,360,000
69	206	160,000	32,960,000	3,296,000	19,776,000	9,888,000
70	215	160,000	34,400,000	3,440,000	20,640,000	10,320,000
71	232	160,000	37,120,000	3,712,000	22,272,000	11,136,000
72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3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4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5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6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7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8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79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0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1	238	160,000	38,080,000	3,808,000	22,848,000	11,424,000
82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3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4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5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6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7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8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89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90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91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92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93	236	160,000	37,760,000	3,776,000	22,656,000	11,328,000
94	236	159,333	37,602,660	3,760,260	22,561,600	11,280,800
95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96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97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98	237	160,000	37,920,000	3,792,000	22,752,000	11,376,000
99	237	159,333	37,762,000	3,776,200	22,657,200	11,328,600
100	239	159,333	38,080,660	3,808,060	22,848,400	11,424,200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유의서 열람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진도군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
유의서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성 명 : (인)

진도군수 귀하

확 약 서

본인은 진도군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성용지를 신청(분양) 하는 자로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 신청 유의서”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발견 또는 신고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시행자에게 납부(귀속)하는 등 본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성 명 : (인)

진도군수 귀하

입주민협의회 가입 동의서

본인은 진도군 신기지구 전원마을조성용지를 신청(분양)하는 자로서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수 있도록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발전하고자 입주민협의회에 가입을 동의 합니다.

-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써 다음조건에 동의한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하기 위하여 공동설계, 공동건축, 공동관리를 입주민협의회에서 시행 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2020. 11. 30.까지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완료 나. 건축은 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로 시공

2020. . .

성 명 : (인)

진도군수 귀하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표준분양계약서

○ 주택용지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번지(택지번호 :)
 - 대지면적 m²

위 표시의 주택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진도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택용지를 분양 받는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주택용지를 분양대금 0원정(W 원)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주택용지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분양구분 (주택용지)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m ² 당	계			

○ 주택용지 분양대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분양구분	총 분양금액	계약금(10%)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중도금(6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 이전등기시)

② ‘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체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성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주택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시의 단가에 의하여 준공시 증감한다.

제2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감안, 공사 준공전이라도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3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농어촌 주택 등 건축기준)① 주택용지를 분양 받는 자는(이하 “을”이라한다) 조성용지 주택의 건축은 분양용지 소유권이전 등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의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허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착공이 불가 할 경우 “갑”의 승인 받아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주택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 건축)와 부합되도록 한다. 단 4순위 이후 분양자는 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서의 입면 형태에 준하여 건축하고 평형은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할수 있다.

③ “갑”은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④ “을”은 주택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 및 농촌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계획 수립시 제시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신청자 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용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면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이 가능한자에 한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①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한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은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분양된 조성용지를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잔금을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 납부 전에 분양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1. 기타 군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을”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 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지연 이자) 분양계약자가 약정기일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인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가 인정 하는 경우

제8조(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 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② “갑”은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한다.
- ③ 제5조제1항의 분양계약의 해제사유중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분양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계약해제시 1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 ⑥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시 예치이자는 “갑”에 귀속되며,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비용은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용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3.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

제10조(하자보수) ① 준공당시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1조(통보의 의무)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자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 통고등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조성용지를 분양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성용지의 현물 및 본

유의서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분양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등 관련법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 .

○ “갑”(분양자)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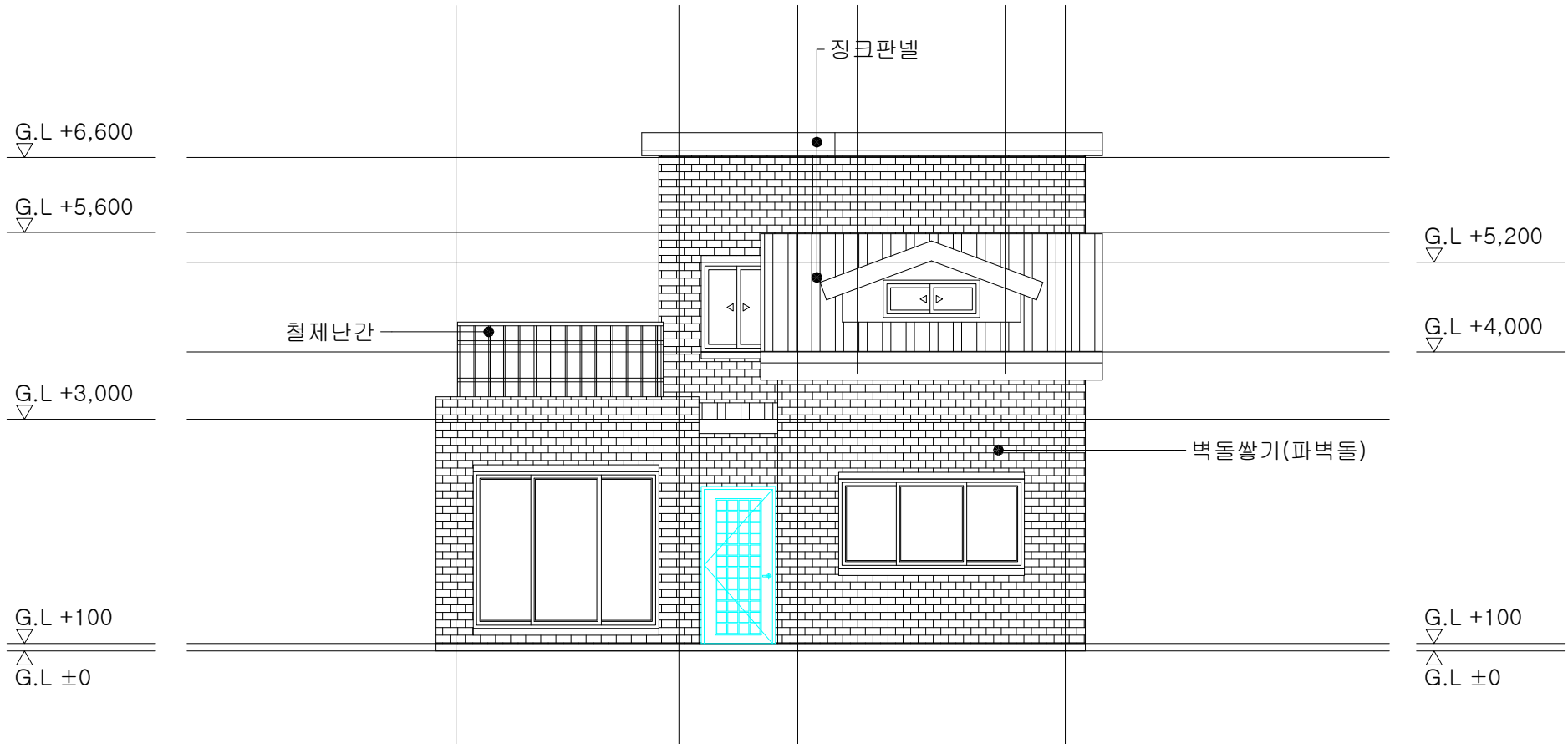
○ “을”(피분양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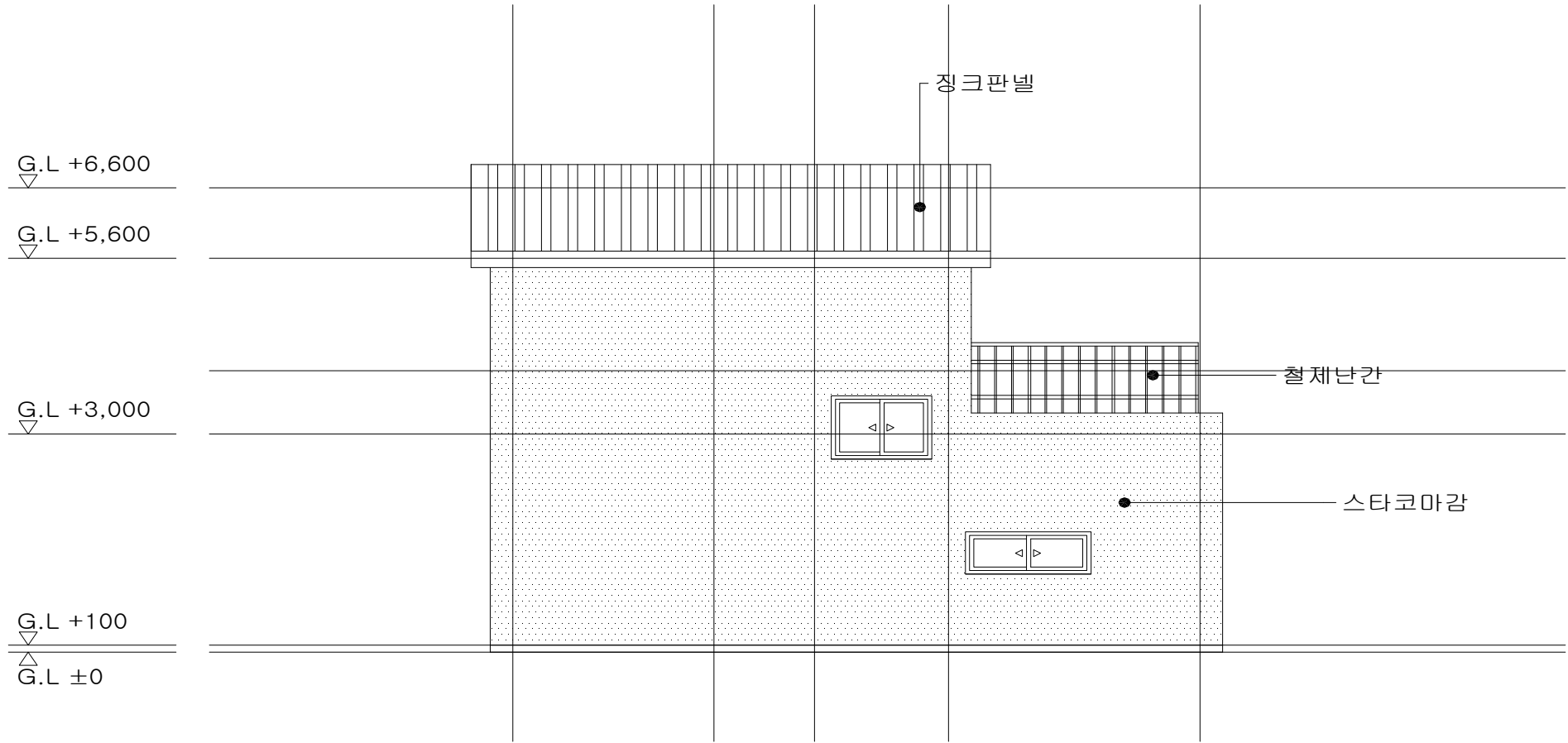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표준설계도

- 가.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 나. 건축물의 구조 : 스틸하우스
- 다. 건축면적(연면적) : 56.36m²(81.16m²)
- 라. 면적개요 : 지상1층 56.36m², 지상2층 24.80m²
- 마.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바. 법적 건폐율(용적율) : 60%(100%)
- 사. 실내외 재료 마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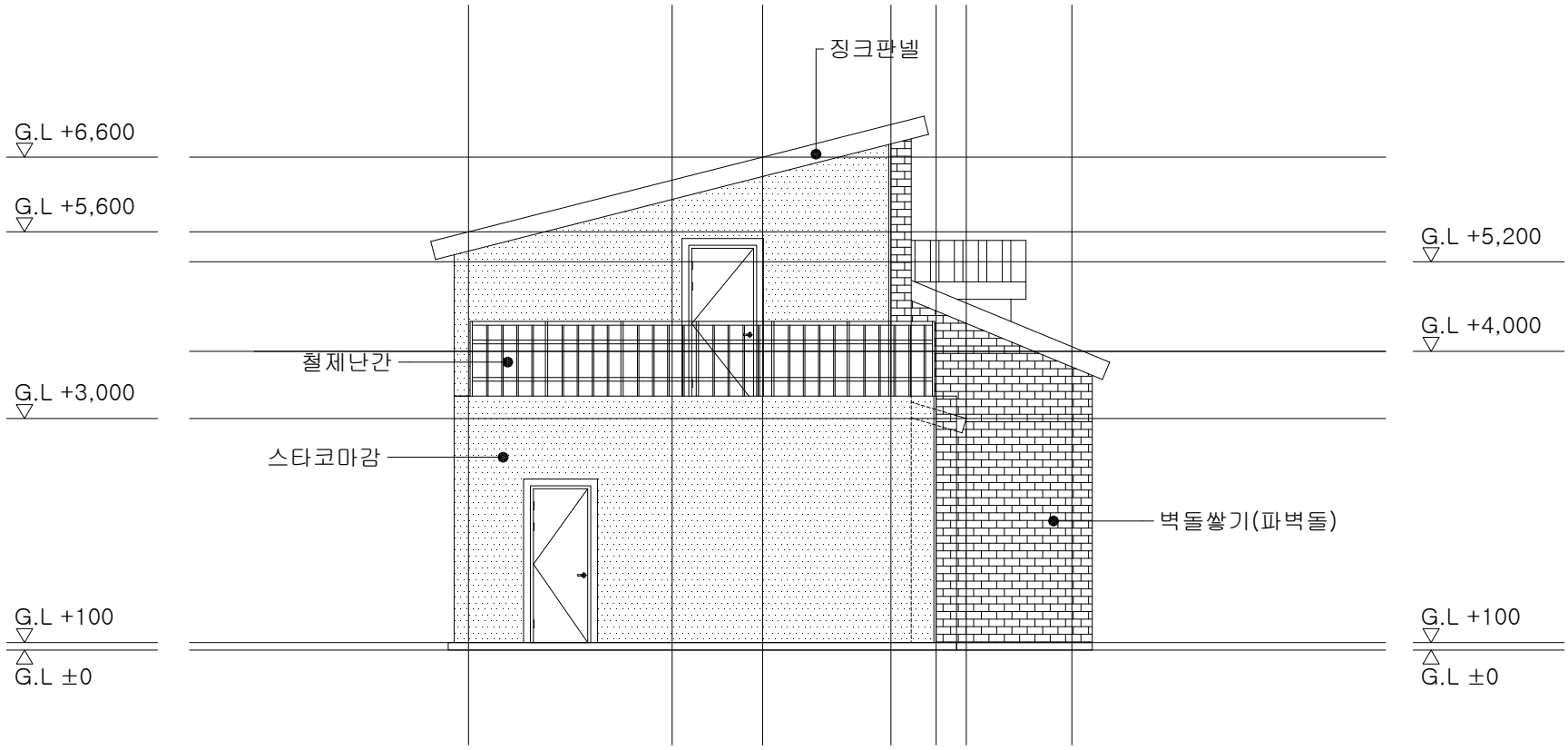
구 분	실 명	바 닷		걸 레 받 이		벽		천 장		비 고
		바 탕	마 감	바 탕	마 감	바 탕	마 감	바 탕	마 감	
지상1층	거 실	시멘트 몰탈	장판지 마감 (건축주 지정)	/	MDF 걸레받이(기성품)	T9.5 석고보드 2겹	벽지 마감	경량철골 천정틀 (M-BAR)	T9.5 석고보드 2겹 천정지 마감	
	안 방	시멘트 몰탈	장판지 마감 (건축주 지정)	/	MDF 걸레받이(기성품)	T9.5 석고보드 2겹	벽지 마감	경량철골 천정틀 (M-BAR)	T9.5 석고보드 2겹 천정지 마감	
	주 방	시멘트 몰탈	장판지 마감 (건축주 지정)	/	MDF 걸레받이(기성품)	T9.5 석고보드 2겹	벽지 마감	경량철골 천정틀 (M-BAR)	T9.5 석고보드 2겹 천정지 마감	싱크대 주변 벽 : 지정타일 (건축주 지정)
	욕 실	구배 몰탈	자기질 타일 마감	/	/	THK15 시멘트 몰탈	도기질 타일 마감	경량철골 천정틀 (WIRECLIP-BAR)	PVC 천정재 마감	벽 : (액체방수 2종)
	현 관	붙임몰탈	석재타일 마감	/	/	세라민페인트(H:100)	T9.5 석고보드 2겹	벽지 마감	경량철골 천정틀 (M-BAR)	T9.5 석고보드 2겹 천정지 마감
	다 락	기포 콘크리트	장판지 마감 (건축주 지정)	/	/	T9.5 석고보드 2겹	벽지 마감	/	T9.5 석고보드 2겹 천정지 마감	
외 부	외 벽	벽돌쌓기(파벽돌), 스타코 마감								
	지 붕	징크판넬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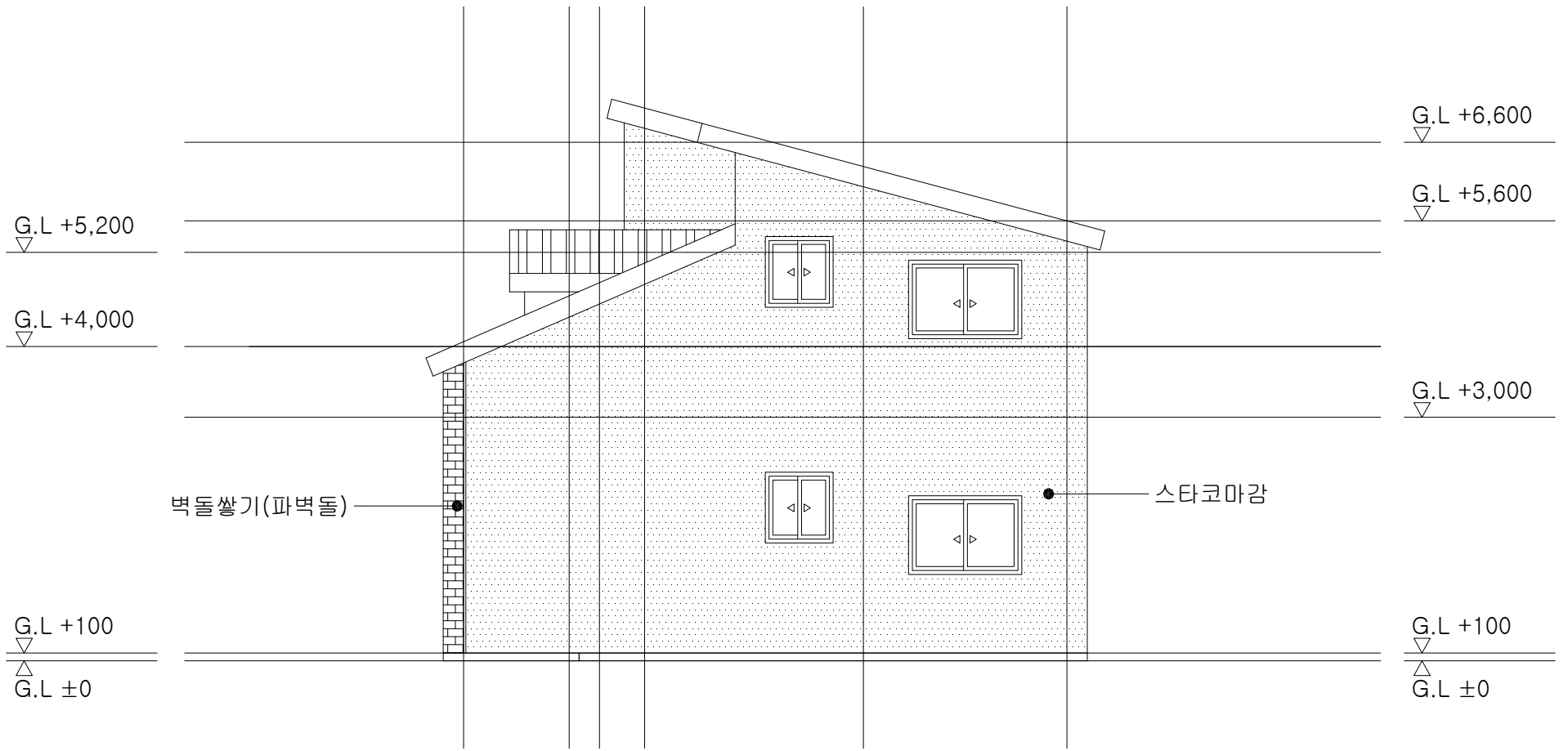
〈 정 면 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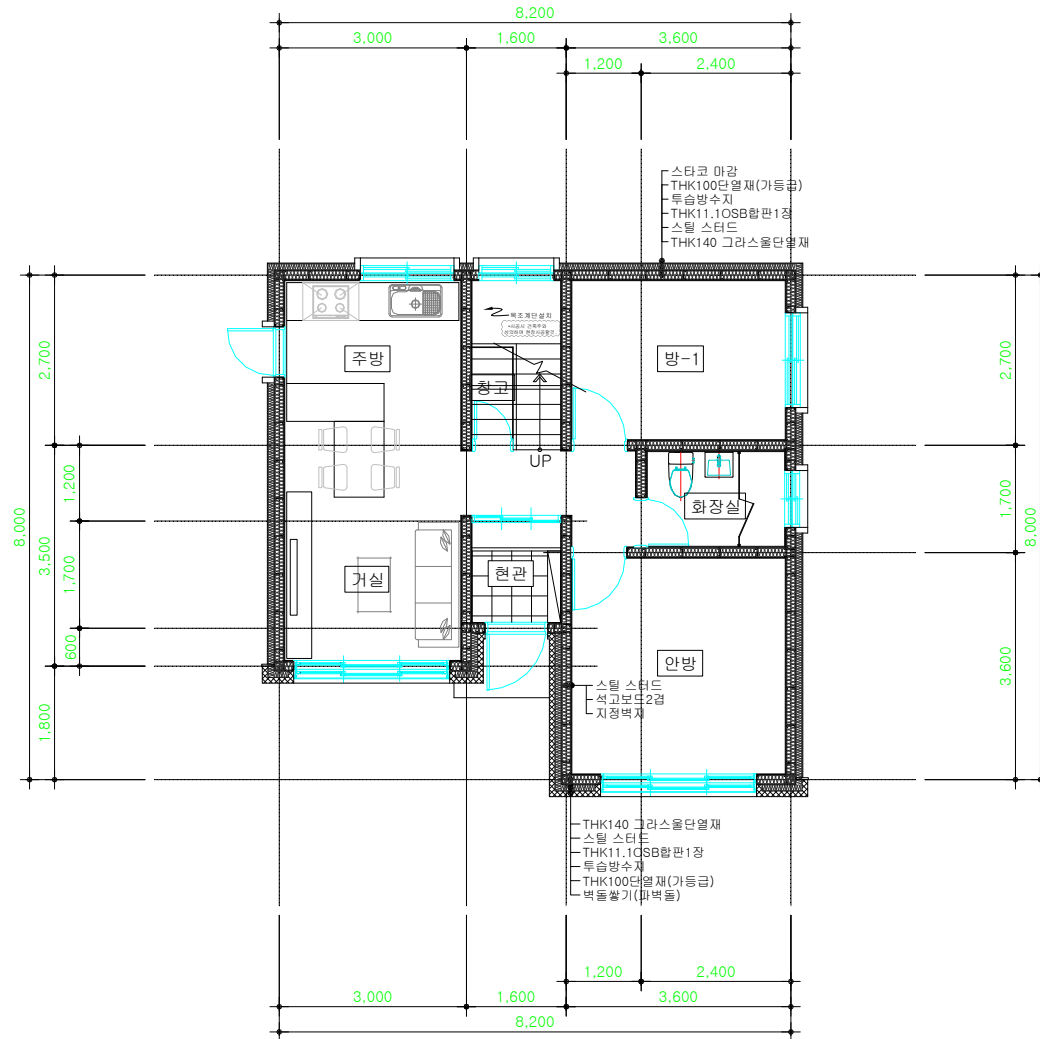
< 배 면 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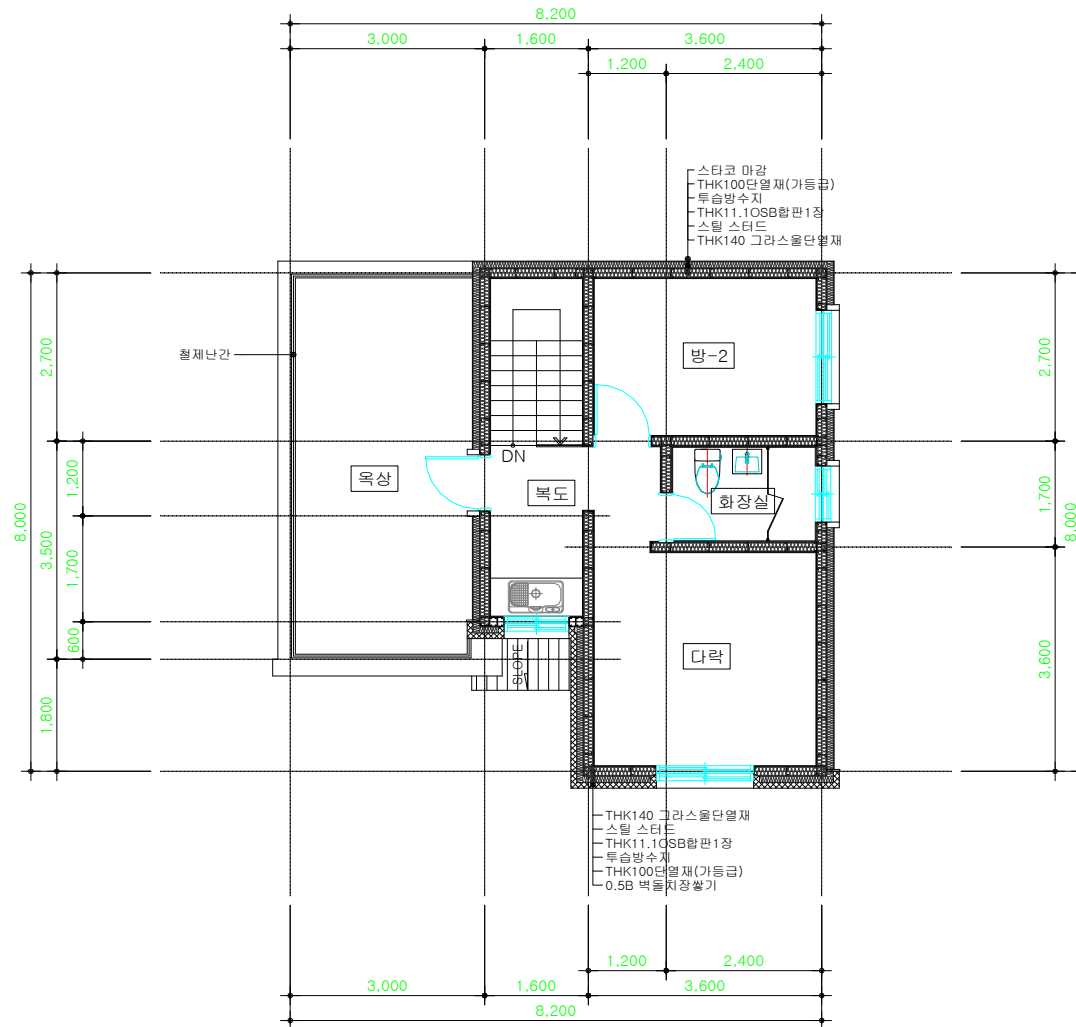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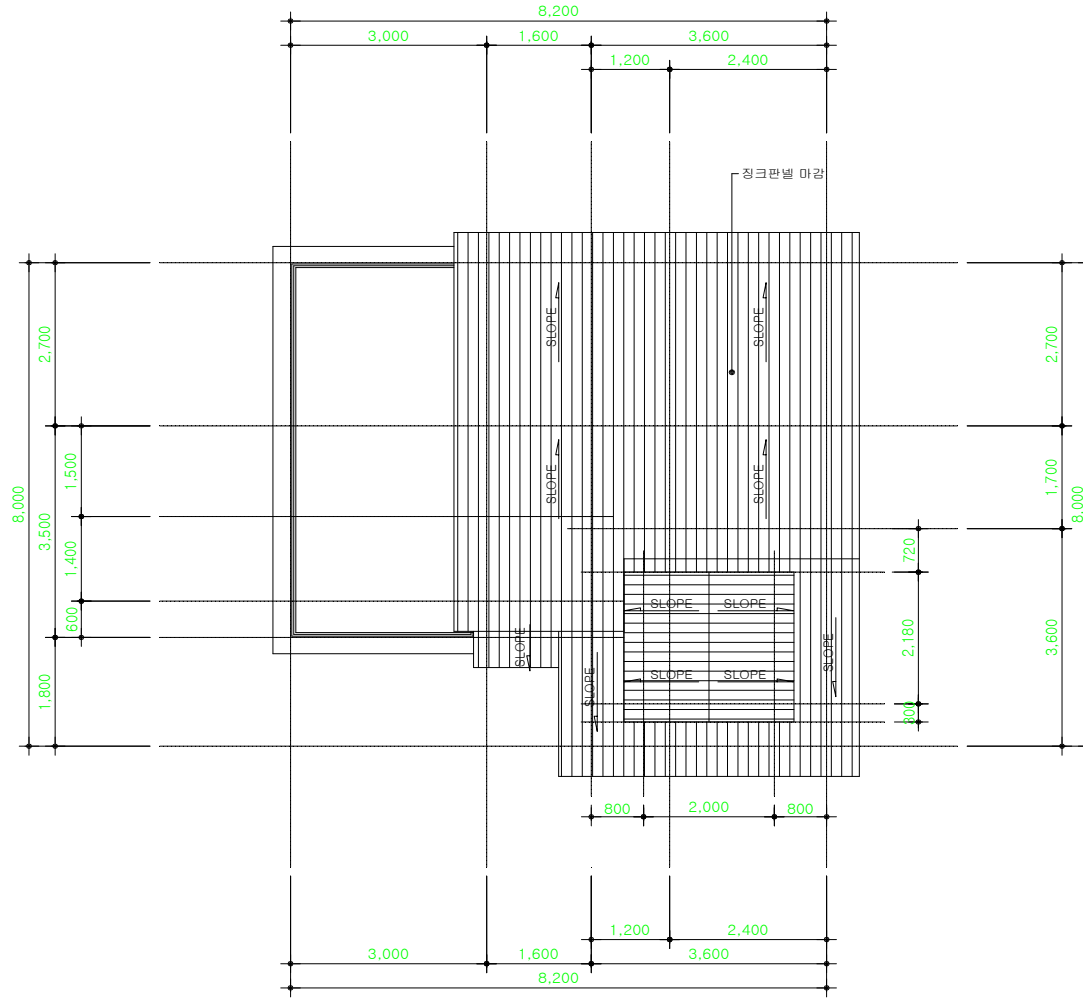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지붕평면도〉